

#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 (의안번호 제813호)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7. 4 송정현의원 외 8명  
나. 회 부 일 자 : 2003. 7. 4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3. 7. 10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 2. 주 문

- 지난 5. 9일과 5. 13일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제6절 삭제)안은 가득이나 어려운 농촌지역 시·군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이번 법개정에 대하여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하여 건의문 채택

### 3. 제안이유

- 도축세 재원으로 가축 집단사육장, 도축장의 환경수질오염방지 및 가축 전염병 예방에 긴요하게 사용
- 고성군의 도축세는 총세수의 1.4%로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으로서는 도축세 폐지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예상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 건의안은 2003년 5월 9일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과 5월 13일 한나라당 권기술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2003년 7월 4일 송정현의원외 8명의 발의로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 도축세의 보전대책 없이는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전면 반대하는 건의안으로

- 당초 축산물 수입 완전개방과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발생 등으로 국내 축산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명목으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과 권기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추진은 농촌 시·군의 실정을 잘못 이해하는데서 온 결과라고 생각됨.
- 최근에 우리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도축세는 납세의무자가 소·돼지의 도살자로서 축산농가도 있지만 대부분 축산농가로부터 소·돼지를 매수하여 도축장에서 이를 도살하는 식육판매업자, 축산물가공, 유통업체 등이므로 오히려 육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소비세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세수 측면에서도 우리군의 2002년 도축세 174,000천원은 2002년 우리군 총 세수의 1.4%를 차지하는 등 지방세의 주요 재원으로서 이를 폐지할 경우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02년도 우리군 소재 도축장(유성산업) 도축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식육판매업자, 축산물가공, 유통업체 도축은 58,330두(소·돼지)인 반면, 축산농가 개인 도축은 312두(소·돼지)로 전체 도축 두수에서 1%미만 실정이며, 2002년도 도축세 징수현황은 식육판매업자, 축산물가공, 유통업자가 부담한 도축세는 173,500천원(99.7%)이고 축산농가 개인이 부담한 도축세는 500천원(0.3%)으로 되어있음.
- 따라서 우리군 의회에서는 도축세 보전대책 없이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은 현재 추진중인 지방분권화와 자주재원 확충에 역행하는 것으로 반대하지 않을수 없으므로 도축세폐지를위한지방세법개정 반대 건의안을 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3. 7. 10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 813 호
의 결 년 월 일	2003. 7. 14. (제108회)

의 결 사 항	건의안 채택
------------------	--------

##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개정에 관한 건의문

발 의 자	송정현의원 외 8인
발의년월일	2003. 7. 4.

#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건의문

의안 번호	813
----------	-----

발의년월일 : 2003. 7. 4.

발 의 자 : 송정현의원 외 8인

## 1. 주 문

- 지난 5. 9일과 5. 13일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과 권기술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제6절 삭제)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 시·군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이번 법개정에 대하여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하여 건의문 채택

## 2. 제안이유

- 도축세 재원으로 가축 집단사육장, 도축장의 환경 수질오염 방지 및 가축 전염병 예방에 긴요하게 사용
- 고성군의 도축세는 총세수의 1.4%로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으로서는 도축세 폐지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예상

## 3. 참 고

- 가축사육 및 도축현황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 건의문

지난 5. 9일과 5. 13일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과 권기술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제6절 삭제)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 시·군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이번 법개정에 대하여 우리군 의회 의원일동은 심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축세가 세수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비록 미미한 규모가 될지는 몰라도 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으로서는 그나마 큰 보탬이 되고 있고,

그 재원으로 가축집단사육장 및 도축으로 인한 환경수질 오염 방지, 구제역 등 전염병 발생 시 공중위생보호 등에 정말 긴급하게 써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도축세 폐지 법안의 제안 사유를 살펴보면